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10.01 (월) 유인환 의원외 2인
- 나. 회부일자 : 2007. 11. 26(월)
- 다. 상정일자 : 2007. 12. 04(화)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조례특위 상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평창군의회 의원 유인환)

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확보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2)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 건설산업관련 다양한 지원·육성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3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지원시책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11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였음.
- 안 제3조(군의 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율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논리로 볼 경우에도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사항은 타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 기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자구용법 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다. 결과적으로,

-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문구성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 유인환의원외 2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 년월일 : 2007. 10 . 01

발 의 의 원 : 유인환 의원외 2명

1. 제안이유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내지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추계서 『붙임2』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공사업 또는 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 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 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4.15>

② 일반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